

제주지방법원 2023. 5. 26 선고 2021가단5092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정빈

피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웅

변론 종결2023. 4. 21.

판결 선고2023. 5. 26.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기재 식당 영업에 관하여 2020. 6. 4. 체결된 영업양도계약을 28,089,59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8,089,5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기재 식당 영업에 관하여 2020. 6. 4. 체결된 영업양도양수계약을 29,089,59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9,089,5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사실관계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 1) 원고는 2019. 1. 28.경 C로부터 제주 서귀포시 D 소재 주택을 보증금 7,500만원에 임차하였는데, 2020. 1. 27.경 그 임대차계약이 기간만으로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
- 2) 원고는 2020. 2. 3. 제주지방법원 2020가단51602호로 C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3. 31. 'C는 원고에게 7,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무변론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0. 4. 21. 확정되었다.

나. C의 재산처분행위 및 당시 재산상태

- 1) C는 2017. 12.경부터 E협회(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제주시 F 소재 건물 1층 약 30㎡를 임차하여 'G'이라는 상호로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었다.
- 2) 원고는 위 제주지방법원 2020가단51602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20. 5. 8. 제주지방법원 2020타채23380호로 'C가 제3채무자 H 주식회사 등에 대하여 가지는 카드매출채권을 압류하고 원고가 이를 추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이 2020. 5. 29. C에게 송달되었다.
- 2) C는 2020. 6. 4. 조카인 피고에게 이 사건 식당의 영업(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영업에 관한 자신의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폐업신고를 하고, 피고의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 3) 피고가 2021. 4. 30. I에게 이 사건营业을 300만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4) C는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영업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감정인은 이 사건 식당의 기존 시설물이 노후화되어 가치가 희박하고 리모델링 공사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유형재산을 제외하고 무형재산만을 평가하여 2020. 6. 4. 당시 이 사건 영업의 가액을 2,500만 원 상당으로 감정평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J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일인 2020. 6. 4.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자가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로서의营业을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킨 경우, 영업양도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84162 판결 등 참조).

2) C가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하여 7,5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던 데 반하여 적극재산으로는 가치가 희박한 유형재산을 제외한 평가액이 2,500만 원 상당인 이 사건 영업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는데, 이 사건營業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채무초과상태가 더욱 심화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는 이 사건 양도계약으로 인하여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상태가 심화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의 선의 여부

가)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이 C에 대한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76321 판결 등 참조).

다) 피고는 C와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 등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게 됨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추정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1, 3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선의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C는 사실상 이 사건 영업이 유일한 재산임에도 식당 운영 경험이나 조리사 자격도 없는 피고에게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이 사건营业을 양도하였는데, 피고로서는 자신이 무상으로 营业을 양수받게 된 경위를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더구나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C는 피고에게 '개인 사정 때문에 내 명의로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였고, 피고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적어도 C가 채무나 법률적 문제로 인하여 이 사건 营业을 자신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임을 추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가 이 사건 식당의 营业을 양수한 이후에도 C는 계속해서 이 사건 식당을 주도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는 2020. 7. 13.경 이 사건 营业에 관한 자신의 사업자등록을 그대로 둔 채 이 사건 식당의 营业을 포기하였으며, 그 이후에 2021. 6.경까지도 이 사건 식당에 관한 자신의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식당 营业의 경과는 C가 주로 카드매출채권에 대한 원고의 압류 및 추심을 회피할 의도로 피고에게 이 사건 营业을 양도하였고, 피고로서도 이러한 C의 상황을 알았던 것으로 보게 만드는 사정이다.

④ 피고는 2021. 12. 31. 검찰로부터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지만(을 4),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으로 이 사건 식당의 营业을 양수받은 이후 그 营业을 포기한 2020. 7. 13.경부터 C가 피고의 사업자등록 및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카드매출채권을 은닉하는 데에 가공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미여서, 위 불기소처분만으로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사해행위에 대한 피고의 악의 추정이 반복된다고 볼 수 없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원상회복의 방법 - 가액배상 가) 영업양도 후 종래의 영업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하면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채무자에게 회복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보전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포함된 일체로서의 영업의 가액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84179 판결 등 참조).

나) 위 사실관계와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영업이 피고에게 양도된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고, 이 사건 영업은 다시 제3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존재하던 이전 영업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채무자인 C에게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영업의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가액배상의 범위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7,000만 원 상당¹⁾ 이고, 이 사건 영업의 가액은 가치가 희박한 유형재산을 제외한 무형재산 평가액 2,500만 원으로 감정평가되었다.

나)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C가 보유하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가액 41만 원, 1년분 차임과 상하수도료 등 부가분담금 합계액의 2020년 하반기 부분 2,679,590원, 냉장고, 식기 등 가액 100만 원도 이 사건 영업의 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1) 감정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감정인은 2020. 6. 4. 당시 이 사건 영업의 가액을 평가하면서, 가치가 희박하고 기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형재산을 제외하였고, 무형재산만으로 장래 영업이익에서 비용을 공제하여 현가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가액을 2,500만 원 상당으로 평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영업양도의 대상이 되는 영업은 유형의 영업재산과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로 구성되는데, 영업재산에는 점포·공장 등의 부동산, 원료·기계·상품 등의 동산, 거래대금과 임차권 등의 채권, 특허권 등의 무체재산권 등이 있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는 영업권으로서, 영업상의 고객관계, 경영의 내부조직, 영업비결, 영업의 명성, 확보된 판매망 등과 같이 장기간에 걸친 경영과 영업활동에 의해 축적된 무형의 자산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으로 양도된 영업에는 감정인이 평가한 이 사건 영업의 무형재산 2,500만 원 상당 이외에도, 임차권, 식당설비 등 유형재산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을 제3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C는 E으로부터 임대기간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 보증금 41만 원, 연 차임 및 상하수도료 등 부가분담금 합계 5,359,18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식당을 임차하고 있었고, C는 위 보증금, 연차임, 부가분담금을 모두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2020. 6. 4.경 이 사건 양도계약을 통해 이 사건 영업에 포함된 영업재산으로서 위 임차보증금 41만 원, 미리 지급된 2020. 7.부터의 연차임 및 부가분담금 합계 2,679,590원(= 5,359,180원 × 1/2)에 관한 권리도 포괄적으로 양수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냉장고, 식기 등에 관하여는, 피고가 위 물품을 이 사건 양도계약을 통하여 영업재산으로서 양수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구체적 내역을 확인할 자료가 없고, 그 가액이 100만 원 상당이라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피고가 감정절차에 앞서 그 가액이 100~200만 원 정도로 예상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만으로는 냉장고, 식기 등의 가액을 100만 원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4)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을 통하여 양수받은 이 사건 영업의 가액은 유형재산으로 임차보증금 41만 원, 연차임 및 부가분담금 2,679,590원, 무형재산으로 영업권 2,500만 원 합계 28,089,590원 상당이라고 할 것이다.

3) 중간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양도계약은 원고의 채권액 7,000만 원 상당보다 작은 금액인 이 사건 영업의 가액 28,089,59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28,089,5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고진흥

별지

1) 원고의 배우자는 2020. 7. 27. 담당 경찰관과 통화하면서,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 중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하여 카드회사로부터 500만 원 정도를 추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